

제·개정일자	2024. 06. 28.
작성부서	에너지환경기획팀

녹색구매 정책

(Green Procurement Policy)

Rev.0

제1조. 목적

(주)세아제강(이하 '회사')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는 ESG 비전 하에 환경적 영향이 적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녹색구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구매부서의 녹색구매 활동을 정의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제정하고 선언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공장, 영업소 등 회사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또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사무용품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의 모든 구매활동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녹색구매'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구매하는 친환경적 구매 활동.
- ② '녹색제품'이란 아래에 해당되는 제품.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제품 내지 아래 각 호의 제품
 - 가)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나) (저탄소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다) (우수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2) 에너지 절약형 제품
 - 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 따른 1,2등급 제품

나) 에너지 절약 마크 인증제품

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

3) EU Ecolabel, Nordic Swan 등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외국의 환경 Label을 획득한 제품

제4조. 기본원칙

- ① 원부자재 공급, 운반, 생산, 유통, 폐기물 처리 등 사업운영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녹색구매 활동을 실천합니다.
- ② 생산에 필요한 자재 구매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모성 자재에 해당되는 일반자재를 포함하여 녹색구매를 실천합니다.
- ③ 실질적인 녹색구매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재 발굴을 실시하며,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침을 마련합니다.
- ④ 녹색구매 주관 부서 및 청구 부서 요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시 '녹색구매 정책'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매 실적을 모니터링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4. 06. 28.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